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

제출년월일 : 2014. 11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“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”는 2006년 창립당시 군의 캐치프레이즈였던 “**우리의 고향평창**”과 “**지방의제21**”의 실현이라는 두 용어를 합하여 **“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”**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,

○ 대외적으로 명칭이 너무 길고 생소하며, 2012. 12. 11.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과 명칭이 상이하여, 법률 명칭과 같은 **“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**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**조례 명칭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**
나. **협의회 명칭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(안 제1조)**
※ 2013.9.12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명칭변경 결정(강원도 조례제정 11개 도.시.군 중 6개 시군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사용 중)
다. **우리의고향21 용어의 정의 삭제 (안 제3조1)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라. 기 타 :
1) 입법예고(2014.09.11. ~ 2014.10.0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

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후단 중 “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”를 “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우리의고향평창21”을 각각 “평창지속가능발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우리의고향평창21”을 “평창지속가능발전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우리의고향평창21”을 “평창지속가능발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	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1992.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가 채택한 의제21(Agenda 21)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.)를 설치하고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. ----------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-- ----------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우리의고향평창21”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・기업・평창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・기업・평창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.	제3조(정의) ----------. <삭 제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	제4조(기능) ----------

의 기능을 수행한다.	----------.
1. “우리의고향평창21” 의제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, 홍보 등	1. “평창지속가능발전” ----------
2. “우리의고향평창21”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	2. “평창지속가능발전” ----------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협의회 구성) ①·② (생략)	제5조(협의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평창군의 경제, 사회, 환경의 통합적인 우리의고향평창21의 실천을 위해 평창군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, 기업체 임직원, 환경단체 회원, 환경전문가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창군수가 위촉 한다.	③ ---------- 평창지속가능발전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경비의 지원)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	제16조(경비의 지원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우리의고향평창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	2. 평창지속가능발전--------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협의회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 개정안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환경과장 한왕섭
연락처	(033) 330 -2340

관 계 법 령

□ 지속가능발전법

제21조(교육·홍보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

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

제23조(지속가능발전교육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, 전문인력 양성,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(週間)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,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.>